

# 전산정보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전산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전산정보원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정보지원에 관한 업무

1. 정보의 사용권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학사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학사행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업무
4. 인트라넷 구축운영 및 웹서비스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② 서비스지원에 관한 업무

1. 전산 서버 및 각종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캠퍼스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학생편의 시설 PC 관리, PC유지보수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교육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
6. 전산보안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7. 대학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자연과학/인문사회계열 전산실습실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③ 기타 위 항에 부수되는 업무

제3조(서비스운영)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처리 한다.

1. 홈페이지는 매년 3월 기준 3년치 자료만 보관하고 이전자료는 삭제한다.
2. 메일 패스워드 주기적(분기 1회)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3. 메일 자료는 매년 3월 기준 3년치 자료만 보관하고 이전 자료는 삭제 한다.
4. 퇴사자의 메일 계정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후 차단 삭제 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이 정한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전산정보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전산정보원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구성) 전산정보원에는 원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구성) ① 전산정보원에서 계획 및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산정보원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중요사항
2. 전산정보원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산정보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전산정보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정보서비스 평가, 개선 및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 한다.

제9조(이용대상) 전산시스템 이용자는 대학 교직원, 재학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10조(이용제한) 원장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이용을 제한, 차단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9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로 폐지한다.

② (경과조치) 2020년 6월 1일부 대학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이 규정은 폐지하고 학술정보원규정으로 제정한다.